『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9. 7.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론 ---------- 1

제1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민간전문가 구분 및 자격기준

제4절 민간전문가 참여 가능 대상사업

제2장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운영 ----------3

제1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제2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제3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기준

제3장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 ---------- 7

제1절 공공건축가의 업무

제2절 공공건축가 운영 및 보수기준

제4장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및 공공기관 준비사항 ----------9

제1절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제2절 공공기관 지원사항 및 준비사항

〈양식1〉 업무일지 양식(사업별 민간전문가 활동 내용) ----------12

제1장 총론

제1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기본방향

1-1-1 이 가이드라인은『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1-2 민간전문가 제도는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가이드라인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제23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1-2-2『건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절 민간전문가 구분 및 자격기준

1-3-1 본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전문가란 공공기관의 장이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등의 직명으로 위촉한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①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라 하며, 이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라 칭한다.

②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1-3-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를 따른다.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②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③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절 민간전문가 참여 권장 대상사업

1-4-1 민간전문가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한다.

①『건축기본법』,『건축법』,「경관법」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등

②『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한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천법』,『도로법』등에 의한 공공시설사업 등

④『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농산어촌 정비 및 개발 관련 사업 등

⑤ 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시범사업

⑥ 마을만들기 사업,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⑦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도시·경관 관련 사업

제2장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운영

제1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2-1-1 시·군·구 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각종 기본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도시 관련 사업과 정책의 발굴·기획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한다.

② 장소중심의 중장기 계획방향과 추진사업을 담은 통합마스터플랜(공간환경 전략계획 등) 수립을 지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및 자문하며, 사업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 및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지침 마련 등에 참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업에 적합한 설계업체(자)·시공업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방식을 검토하고 사업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에 참여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방식에 대해 검토, 자문, 운영 등을 지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마련과 선정 등에 참여하고,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건축가 교육 등을 지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전시 및 행사에 대한 기획과 추진을 지원하고, 공무원 및 주민 대상의 교육을 지원한다.

⑦ 그밖에 관계법령이나 기준 등에 지자체 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지자체 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등을 지원한다.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 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공모사업(안) 검토 및 자문
2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지(중점추진권역) 검토 및 선정 - 통합마스터플랜 사업추진체계 및 과업지시서 검토, 계획수립 총괄
3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사업간 통합적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 - 건축·도시 관련 법정/비법정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건축, 도시, 디자인, SOC 사업 유형별 관련 기준, 지침, 조례 검토 및 자문 ※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총괄
4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사업 관리·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 : 설계비 1.0억원 이상(2020.1.16. 시행)
5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마련 지원, 선정 등에 참여 -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선진사례 답사 등 주민 교육
7	기타	- 지자체 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 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2-1-2 도·특·광역시 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각종 기본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도시 관련 사업과 정책의 발굴·기획에 대한 자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및 자문하며, 사업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 및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지침 마련 등에 참여한다.

③ 각 사업에 적합한 설계업체(자)·시공업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방식을 검토하고 사업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에 참여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방식에 대해 검토, 자문, 운영 등을 지원한다.

④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마련과 선정 등에 참여하고,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공공건축가 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관할지역 교부금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센터운영에 대해 지원한다.

⑤ 건축도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과 추진을 지원하고, 공무원 및 주민 대상의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관할 시군구 단위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그밖에 관계법령이나 기준 등에 지자체 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지자체 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등을 지원한다.

<도·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 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2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시군구와 동일
3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시군구와 동일
4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추천 및 운영 지원(교부금 지급 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체계 마련) -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공공건축가 추천 및 파견 지원 -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
5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 시군구 단위 민간전문가 제도 및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시군구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
6	기타	- 지자체 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 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2-1-3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위촉 시 "도·특·광역시 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를 준용하되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1-4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2-2-1 도·특광역시와 시·군·구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도·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상호 정보교류 및 의견소통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의 모임이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도 교부사업의 사업관리체계를 통해 해당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③ 도·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없는 관할 시·군·구에서 도·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참여 또는 공공건축가의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2-2-2 공공기관의 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수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총괄·조정 또는 자문할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참여 단계 또는 시기를 명확히 한다.

②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참여할 정책 및 사업부서와 업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부서장들과 회의를 정례화한다.

③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파악하고, 주요 부서장들과의 논의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주요 정책회의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참석을 정례화한다.

④ 공간환경사업 관련 위원회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기관 여건에 맞는 업무수행 체계를 마련한다.

제3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기준

2-3-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임기 및 근무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는 비상근직으로, 최소 주 2일(월 8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지 및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3-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는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류 작업 및 검토 등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검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또는 '건축사(보)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부기관장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보수기준(정무직 공무원)'을 적용한다.

③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

제1절 공공건축가의 업무

3-1-1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자문한다.

②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조정·자문한다.

③ 공공건축가는『국가계약법』등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조례 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가의 업무>

구분		주요내용
1	건축·도시 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기획단계 자문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조정·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 국가정책사업(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의 조정·자문 - 각종 정비계획* 수립의 조정·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3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음
4	기타	- 심의 및 심사 참여 -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마련에 참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일부개정 '18.12.18, 시행 '19.12.19)으로 건축기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3-1-2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공공건축가 운영 및 보수기준

3-2-1 공공건축가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업부서와 공공건축가간의 업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의 개최 시 공공건축가 참석을 정례화한다.

③ 그 밖에 공공기관 여건에 맞는 업무수행 체계를 마련한다.

3-2-2 공공건축가의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는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기획 및 사업책임(MP)의 업무에 대해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문비는 해당년도 공공기관의 자문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노임단가의 건축사 1일 근무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한다.

④ 사업책임(MP)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술사, 건축사 노임단가의 건축사 1일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장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및 공공기관 준비사항

제1절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4-1-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부기관장급의 지위로 위촉하고, 공공건축가를 1인 이상 위촉할 것을 권장한다. 필요시 공공건축가 외에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4-1-2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전문가 선정을 위해 절차, 자격기준, 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추천 또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정을 위해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4-1-3 민간전문가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4-1-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 위촉·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지역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8조)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4-1-5 『건축기본법』 제18조에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위원의 선정 및 구성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4-1-6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단위 조직으로 설치·운영한다. 실무지원조직에는 건축, 도시, 토목, 조경, 공공디자인 기술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며, 실무지원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부서장으로 구성된 "특별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1-7 실무지원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기록 및 관리, 모니터링, 수당지급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 DB구축,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

④ 공공건축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

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

⑥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⑦ 생활SOC 공공건축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축도시문화 진흥 및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⑨ 정책수립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⑩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및 공유에 관한 사항 등

4-1-8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무지원조직은 『건축서비스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기획을 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4-1-10 건축기획 단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경우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제2절 공공기관 준비사항

4-2-1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지위 및 자격기준, 역할과 업무범위,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지급기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행정방침을 받거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2-2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 업무활동을 위해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4-2-3 공공기관의 장은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알리고, 민간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4-2-4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4-2-5 공공기관의 민간전문가 담당부서는 민간전문가의 주요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활동과정을 기록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야 한다. 활동과정에 대한 기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양식1>의 사업별 민간전문가 활동 내용 작성 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4-2-6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활동사항 및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성과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성과사례집의 양식은 브로슈어, 백서 등 자유로운 양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양식1> 업무일지 양식 예시(사업별 민간전문가 활동 내용)

사업명	*예 : 구군청사 부지 마스터플랜*
사업개요	● 위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현안 : ● 사업대상지 개요 : *※ 사업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정리항목 조정가능*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 담당부서 : ● 관련부서 :

진행상황
(※회의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로 연이어 기재)

1) 회의 일시, 회의명

진행단계	기획	계획수립	설계	사업추진 (또는 시공)	유지.관리
참석자	*성명(소속)*				
주요내용	*진행된 내용 또는 민간전문가 주요 의견 또는 현안, 주요 이슈 등을 간략히 기재*				
반영결과	*민간전문가 주요 의견의 반영여부, 조치결과 관련 사항 기재*				

2) 회의 일시, 회의명

진행단계	기획	계획수립	설계	사업추진 (또는 시공)	유지.관리
참석자	*성명(소속)*				
주요내용	*진행된 내용 또는 민간전문가 주요 의견 또는 현안, 주요 이슈 등을 간략히 기재*				
반영결과	*민간전문가 주요 의견의 반영여부, 조치결과 관련 사항 기재*				

민간전문가 참여 주요 성과 (종합)	*사업진행과정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주요 역할과 성과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작성* *★사업비 절감효과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